

2013. 12. 18.

<보도자료>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공보관(전화 : 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3. 12. 18.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I.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사건의 개요

-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A가 시행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201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 2억 4,76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제1심에서 2011. 5. 24.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임
- 한편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A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6. A가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하고 있는 채권의 일부인 '피고의 주택분양

보증계약에 따라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이행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121,593,944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2011. 7. 8.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1. 11. 25.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추심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2. 쟁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제3채무자'라고 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판례임
- 다른 한편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서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같은 소송을 이중으로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면 상대방이 이중으로 소송에 응해야 하고 법원도 이중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판결이 서로 모순될 염려도 있으므로, 먼저 제기된 소송만을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중복소송(이중소송)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임
-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소송을 각하해야 하는데, 아직 그 소송(전소)이 각하되지 않고 있는 중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이하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후소)를 제기하였을 때, 후소인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전소인 채무자의 소와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여 후소를 각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만약 후소인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아직 전소가 각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복소송이라고 하여 각하하고, 전소인 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하면,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됨

3. 하급심의 판단

- 제1심과 원심은 모두,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A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그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앞선 소송(전소)인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이상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나중에 제기한 소송(후소)인 이 사건 소(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 이에 원고가 상고함

II. 판결결과 및 판시사항(요지)

1. 다수의견 : 후소인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중으로 소송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러한 불합리를 피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판례임
- 이와 같이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안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함
- 또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를 채무자의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과 대법원판례가 압류채권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함
- 한편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2. 반대의견(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 후소인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함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함

- 한편 대법원판례는 설령 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이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이유가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이미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압류채권자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님
- 이미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데 그 계속 중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이중으로 소송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3. 판결결과

-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Ⅲ. 본 판결의 의의

-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별도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전소인 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고, 후소인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하게 되어, 어느 것에 대해서도 실체 판단을 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전소에 대하여 아직 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이 쟁점과 관련한 하급심의 적정한 소송 진행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끝>